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3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홍배 · 김한규 · 민병덕
이정현 · 서왕진 · 강준현
홍기원 · 안도걸 · 박희승
김상욱 · 한병도 · 윤준병
김태년 · 박지원 · 정진욱
서영교 · 박정현 · 진성준
최혁진 · 문진석 · 한민수
안호영 · 김남근 · 맹성규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 설></u> 2. ~ 8. (생략) ⑤ ~ ⑦ (생략)	<u>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u>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u> 2.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